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제2차 워크숍 -

2016. 6. 3.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제2차 워크숍 -

2016. 6. 3.



일 정

1. 일 시 : 2016년 6월 3일(금) 13:00~19:00

2.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제1중회의실

3. 사회자: 현대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4. 발표주제

《제1주제》독일 전자상거래 법제의 동향과 시사점

발 표: 장원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 론: 김현수 교수(한남대학교)

《제2주제》일본 전자상거래 법제의 동향과 시사점

발 표: 정진명 교수(단국대학교)

토 론: 고형석 교수(선문대학교)

《제3주제》eu의 전자상거래 관련 지침과 시사점

발 표: 김슬기 교수(대전대학교)

토 론: 육소영 교수(충남대학교)

5. 종합 토론

토 론 : 이민욱 연구인턴(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 제1주제 독일 전자상거래 법제의 동향과 시사점9 |
|-------------------------------------|
| I . 개 관 ······9 |
| Ⅱ. 계약체결과 지급결재9 |
| Ⅲ. 부당한 대금청구에 대한 생활자보호10 |
| IV. 생활자분쟁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11 |
| V. 신뢰와 거래안전: 전자인증12 |
| VI. 시사점 ············14 |
| 제 2 주제 전자상거래법과 해외 법률과의 비교 및 의견 … 19 |
| 제 3 주제 2016년 OEDC의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
| 보호에 관한 권고'개정 개요103 |

제 1 주제

독일 전자상거래 법제의 동향과 시사점

장 원 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개 관

독일에서도 전자상거래(e-commerce)가 장성한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며, 현재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은 웹쇼핑, 온라인 경매, 온라인 광고의 전통적인 형식에 멈추어 있지 않고, 전자상거래 2.0을 위한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어졌다. 과거 온라인 거래와는 달리, 전자상거래에서 오늘날 특히 사물인터넷, 모바일과 앱상거래의 지속적인 중요성 증가, 소셜커머스 등이형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괄적인 소재로써 전자상거래 관련법은 사실상 개별적인 법영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적용자는 통상적으로 일반 민법, 저작권법, 경쟁법의 문제들에 직면한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다양한 특별법상의 규범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Ⅱ. 계약체결과 지급결재

오늘날 온라인에서 계약체결과 지급방식은 신속한 매매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계약상 구속을 시간적으로 앞당겨 놓았다. 동시에 IT발전이 청약의 유인(invitatio ad offerendum)이라는 법리의 종식을 야기 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의문이 부인되더라도, 통상적인 실무와는 다르게 청약의 유인에 대한 포기 하에서 계약체결의 형성이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인터넷경매 시 현대적인 온라인지급 방법과 인터넷계약체결의 시점이 문제되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플

랫폼에서 매도제의는 인터넷경매에 참여한 입찰자의 입장에서 인터넷 플랫폼의 조건에 따른 정당한 청약철회의 유보 하에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1) 매도인이 경매기간의 경과 전 입찰자에게 있는 원인을 근거로 입찰자의 가격제시를 효과 없이 취소하려고 할 경우, 이를 위해 매도 제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매도인에게 법률상 권한이 부여된 근거 또는 비교가능한 중요성이 있는 근거가 고려된다.2) 입찰자에게 있어 가격제시의 파기를 위한 정당한 근거는 경매 종료 전 경매제의를 파기하는 매도인의 결정에 대한 원인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경매제공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철회될 수 있다.

Ⅲ. 부당한 대금청구에 대한 생활자3)보호

지난 몇 년 동안 독일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착오유발 또는 거짓된 판매전략은 전자상거래에서 생활자의 심각한 불안함과 기만을 초래했다. 특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약관에 가격표시를 숨기고, 이를 배너에 잘 볼 수 없도록 위치시키거나 청약 시 비용부담이 있는 정기계약이 중요함을 베일로 가리곤 했다.4) 이러한 행태로 인해 수많은 생활자들은 정기계약 및 비용 사례를 경험하며, 부분적으로 부당한 대금청구에 직면하거나 채권회수기업과 변호사들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당했다.5)

¹⁾ BGH, Urteil vom 23. 9. 2015, VIII ZR 284/14, Tz. 16.

²⁾ BGH, Urteil vom 23. 9. 2015, VIII ZR 284/14, Tz. 20.

³⁾ 하쿠호도 생활종합연구소, 생활자 발상학원, KMAC, 2015에서는 기업이 사람을 제품 또는 생산물의 사용자 또는 생활자로 대하기 쉬우나, 사람을 생활자의 일원이 아닌 다면적 생활을 영위하는 존재로서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있다.

⁴⁾ Spindler/Thorun/Blom, Die Evaluation der Button-Lösung, MMR 2015, 3.

⁵⁾ 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 Kostenfallen im Internet und Praxistest Buttonlösung, 2013; 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 Kostenfallen im Internet, 2011; Spindler/Thor un/Blom, op. cit., Fn. 1 재인용. 또한 한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도까지 5 50만 명의 소비자가 이렇게 인터넷에 유료서비스에 가입하게 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www.infas.de/fileadmin/images/presse/infas Pressemitteilung Telekommunikationsmo

이에 대해 독일 입법자들은 전자상거래에서 대금청구에 대한 생활자보호의 개선을 위한 법률60로 대응하였다. 이 법률은 이른바 옴니버스법률로서 민법 제312g조의 개정 사항을 담고 있으며, 2012년 8월 1일부터시행되고 있다. 이 조항의 내용들은 다시 2014년 6월 13일부터 민법 제312j조에서 재편되었다.7) 이를 통해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의 내용이강화되면서, 사업자는 생활자에게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읽을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이의 위반 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8) 따라서 생활자는 사업자가 인터넷 판매를 위한 플랫폼을 충실히 구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캡쳐화면을 통해 제기하여 계약에 구속되지 않거나,9) 이용자 보호를 위해 Browser Add-on이 제안되고 있다.10)

Ⅳ. 생활자분쟁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

2016년 2월 25일 연방공보(Bundesgesetzblatt)에 유럽연합의 생활자문 제에서 대안적 분쟁해결에 관한 지침11)의 수용과 유럽연합의 온라인

nitor_Internetbetrug_20110819.pdf, 이병준, "전자상거래에서 부당한 대금 내지 요금 청구와 소비자보호 - 소비자권리지침을 반영한 독일 민법을 중심으로 -", 서울법학 제23권 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64면 주) 4 재인용. 우리나라의 사례에 대해서는 앞의 논문, 62~64면 참조.

⁶⁾ Gesetzes zur Änderung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zum besseren Schutz der 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 vor Kostenfallen im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 27. Juli 2011 (BGBl. I S. 1600).

⁷⁾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병준, 위의 논문, 70면 주)15 참조.

⁸⁾ 위의 논문, 70~71면.

⁹⁾ Wendehorst in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2016), § 312j Rn. 23; Maume in Bamberger/Roth, Beck'scher Online-Kommentar BGB (Stand: 1. 2. 2016), § 312j Rn. 18; 이병준, 위의 논문, 66면 주) 7.

¹⁰⁾ Boos/Roßnagel, Nutzerunterstützung im Online-Versandhandel - Automatisierte Einschätzung der Vertrauenswürdigkeit durch ein Browser-Add-on, MMR 2015, 215 et segg.

¹¹⁾ 정식 명칭은 "Directive 2013/1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May 2013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consumer disputes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2006/2004 and Directive 2009/22/EC"이다.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12)의 이행을 위한 법률이 공포되었다.13)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자 부문의 분쟁해결기구로써 승인요건, 승인된 분쟁해결기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의 확보, 분쟁행결에 관한 기업의 정보제공의무,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해 소비자 조정을 규정한 기존 법률의 수정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생활자와 온라인 매매계약 또는 서비스제공계약에 관여하거나 온라인마당을 개설한 기업은 웹사이트에 온라인분쟁해결플랫폼에 대한 링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한다.

♥. 신뢰와 거래안전: 전자인증

2014년 8월 28일 공포된 전자신원확인과 전자서명을 포함한 인증서비스에 관한 유럽연합의 No. 910/2014 규칙(이른바 eIDAS 규칙)나에따라 전자적 신원확인 방법을 해외에서 사용할 때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eIDAS 규칙은 인증서비스에 대한 통일된 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 규칙은 국제적으로도 고려될 수 있도록 인증서비스제공자와 감독기관에 대해 각각 차별화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자신원확인을 위한 국내 방법, 예를 들어 신원확인의기능을 갖춘 독일 신분증을 공공행정과 연계하기 위해 다른 회원국에서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15) 또한 독일 등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모든 신원확인시스템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시스템의 상호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¹²⁾ 정식 명칭은 "Regulation (EU) No. 524/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May 2013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for consumer disputes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2006/2004 and Directive 2009/22/EC"이다.

¹³⁾ BGBl. 2016 Teil I Nr. 9, S. 254.

¹⁴⁾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No. L 257/17.

¹⁵⁾ Sosna, "EU-weite elektronische Identifizierung und Nutzung von Vertrauensdiensten – eIDAS-Verordnung", CR 2014, 825.

eIDAS 규칙에서는 이전과 달리 처음으로 인증서비스 분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인증서비스의 부문은 유럽연합 전자서명지침,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명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유럽연합 전자서명지침은 eIDAS 규칙에 의해 폐지되었다. 전자서명뿐만 아니라, 인증서비스는 전자적인 봉인 및 타임스템프(time stamp)의 영역과 전자등기 및 웹페이지 인증의 전송 영역에서 전자적인 서비스를 의미해야 한다.16)

eIDAS 규칙과 이에 근거한 시행규정들은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시행규정들은 좀 더 작업이 이루어져야 때문에이것이 독일의 많은 부문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될지 아직까지 예상을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의 규칙은 회원국들에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게 됨으로 독일에서도 eIDAS 규칙의 수용을 위한 어떤 입법 등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미 독일에서 전자서명의 여러 영역들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전자서명법 및 전자서명시행명령의 대부분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7) 또한 전자서명법의 규정들에 대한 비판들은 eIDAS 규칙의 조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독일 입법자들은 민사소송법상 증명규정을 적합하게 하거나, 규칙의 법적 효력을 최소한 문구상 민사소송법에 맞추는 기회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18) 그리고 인증서비스제공자의 eIDAS 규칙 위반에 대한 제제규정을 정해야 한다.

인증서비스의 법적용에 있어서는 현재 큰 불활실성이 남아 있다.19) 즉, 독일 내 서식규정이20) eIDAS 규칙에 의해 규정된 적격전자서명과

¹⁶⁾ eIDSA 규칙 제3조 16호와 비교.

¹⁷⁾ Sosna, CR 2014, 825 (832).

¹⁸⁾ Ibid.

¹⁹⁾ 이하 Ibid.

²⁰⁾ 전자통신의 수단으로 원본문서는 전송될 수 없는데, 독일 민법 제126조 제3항은 온라인 의사표시에 관한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른 내용의 합의가 없는 한, 서면양식을 대신해 독일 민법 제126a조에서 의미하는 전자

수기서명의 동등한 대우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문제된다. 동시에 적격전자서명, 적격전자봉인, 증명서명의 일부 특성에서 변경된 요건에의해 신뢰와 법적 안정성이 사실상 무너진다. 이것이 전자적인 법적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로 인해 동반된 위험을 당연히 무시할 만한 것으로 분류하고 나서 오히려 국내시장이 오래도록 필요한 성장을 경험하는지는 두고 보아야할 것이다.

Ⅵ. **시**사점

-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오늘날 법률은 사실상 생활질서로서 보기보다는, 분쟁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를 수 없는 각 사안에 대해 더욱 사회적인 보조수단으로 여겨진다.
- 인터넷에서 사실상의 계약체결 시점은 약관에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의 전체적인 고려를 통해 정해진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인터넷계약의 체결 시 특히, 언제 그리고 어떤 요건 하에서 서비스제공자의 계약 명시적인 의사표시 또는 단호한 태도에 의해 존재하는지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가 생활자에게 부당한 대금 또는 요금을 청구한 경우, 독일에서는 사법적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입법적 해결을 통해 생활자에게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에비하여 우리나라는 계약법적 관점에서 기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양식이 적용될 수 있다. 의사표시자가 전자양식에 자신의 이름을 첨가하고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법상 적격전자서명을 갖추고 있다면, 이러한 양식의 요건을 충족한다. 자필서명과 대등하게 될 수 있는 일반전자서명과 고급전자서명은 독일 민법 제126a조의 법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들은 각각 동일한문서를 전자적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생활자보호지침과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불 공정한 현상에 대응하려고 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생활자보호법에서 는 가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여 생활자가 혼란을 일으킬 여 지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반여부에 대한 제재 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 제2조 4호의 전자 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7호의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전자식 카드 또는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에 필요한 비밀번호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10호). 그리고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 보조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또한 이들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시설·전자적 장치·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증서비스의 등급화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독일 등 주요 나라의 사례²¹)를 참고하여 다양한 인증서비 스를 규정하고 이를 등급화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²¹⁾ UNCITRAL과 유럽연합, 미국의 주요 주정부의 법제에 관해서는 이비안, "공인전 자서명에 대한 선진국의 입법태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1집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450~466면 참조.

【워크숍 자료집】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한다. 전자서명법 개정과 별도로 인증서비스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도록 한다.

제 2 주제

전자상거래법과 해외 법률과의 비교 및 의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
|---|---|
| [시행 2016.3.29.] [법률 제14142호, 2016.3.29., 일부개정] | 최종개정: 2009년 6월 5일 법률 제49호 |
|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5조~제22조)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23조~제25조)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26조~제30조)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31조~제34조) 제6장 보칙 (제35조~제39조) 제7장 별칙 (제40조~제45조) 부칙 | 제1장 총칙 (제1조) 제2장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1절 정의 (제2조) 제2절 방문판매 (제3조~제10조) 제3절 통신판매 (제11조~제5조) 제4절 전화권유판매 (제16조~제25조) 제5절 잡칙 (제26조~제32조의2) 제3장 연쇄판매거래 (제33조~제40조의3) 제4장 특정지속적용역제공 (제41조~제50조) 제5장 업무제공유인판매거래 (제51조~제58조의10) 제5장의2 금지청구권 (제58조의4~제58조의10) 제6장 잡칙 (제59조~제69조) 제7장 벌칙 (제70조~제76조)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의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률은 특정상거래(방문판매, <u>통</u> 신판 - 정상거래의 범위가 매우 | 문판매, <u>통신판</u> - 정상거래의 범위가 매우 연쇄판매거래, 넓음(전자-상거래는 해당안됨) - 업무제공유인 - 1976년 방문판매법에서 시작 당하게 하고, 구 - 002년 통신판매가 추가되 지를 도모함으 면서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 아울러 상품등 률'로 개명됨 원활하게 하고 - 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여하는 것을 민사규율을 둠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 제 2 조(정의) | -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의 규정 없음 |
|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 <u>전기통신</u> , 그 밖에 총 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 | ② 이 장 및 제58조의5에서「통신판매」란 판매업자 - 통신판매의 수단으로 '전기 또는 용역제공사업자가 우편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 통신'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통신판매의 수단으로 '전기 통신'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 에서 정하는 방법(이하「우편등」이라 한다)으로 매 - 통신판매의 대상에 '지정권 매계약 또는 용역제공계약의 청약을 받아 하는 상 리의 판매'도 포함 | - 통신판매의 대상에 '지정권 리의 판매'도 포함 |
|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 품 또는 <u>지정권리의 관매</u>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서 - 특상법도 지정상품, 지정용 | - 특상법도 지정상품, 지정용 |
|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 |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역제 폐지 |
| (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 | | |
| 을 말한다. 다만, 『방문관매 등에 관한 | | |
|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 | |
| 는 통신관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 |
|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 | |
|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 | | |
| 관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
| 4. "통신관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 ④ 이 장 및 제67조제1항에서 「지정권리」란 시설을 - '통신판매중개'에 대한 정의 | - '통신판매증개'에 대한 정의 |
|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 |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 중 국민의 일상 | 규정이 없음 |
|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 생활에 관련된 거래에서 판매되는 것으로서 시행명 | |
|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 | | |
| 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 | | |
| |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위를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 | | |
| 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 | |
|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 | | |
| 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
|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 | | |
| 늘 포함한다. 이하 같다):누입·찬배하시 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 |
| 제 3 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방무꽈매 등에 과학 법률, 제2조제6호의 | | - 특상법은 방문판매를 중심 으로 규정하고 있음 |
|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 | | |
|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 | |
| | | |

|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 |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 |
|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거 | |
| 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 |
|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 |
| 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 | |
| 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
| 1. 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약관 또는 | |
|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로 거래 | |
| 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 | |
| 2.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관매 등에 관 | |
| 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 |
| 다른 방법으로 하는 계약서 교부의무 등 | |
| 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 |
| ③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범(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 권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관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 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 | | |
| 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와 미리 전자문서로 | | |
|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전자문 | | |
| 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정 | | |
| 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로 전자문서(「전자 | | |
|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 | |
|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송 | | |
| 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해당 | | |
|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 |
| 다만, 긴급한 경우,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 | | |
| 서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소 | | |
| 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대통령 | | |
|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 |
| 立 | | |
| ② 사업자는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 | |
|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 | | |
| 다)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려면 대통령령 | | |
| |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자문서의 효 리, 수령 절차 및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할 때 소비자 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이 강제되 상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이 강제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 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 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 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 문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 에 따라야 한다. 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전자문서 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 지한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사이 버물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자들은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협 력하여야 한다. | | |
|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 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 | 제12조의2(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주 - 일본의 경우 과대광고에 무대신은 전조에서 규정하는 표시에 해당하는가를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표 기 위해서 주무관청은 판매 시를 한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권을 | - 일본의 경우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서 주무관청은 판매 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권을 |

합리적 가짐

H

뒷받침하게

표시를

정하여

个 2対

열람.보존할

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 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일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가 그 자 료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제14조 제1항 및 제15 조 제1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표시는 전조에서 규정하는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 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 사업자는 전자 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 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 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 여야 한다. | | |
|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① 사업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대급기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급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 대급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 대급자급이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하면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 |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2. 재화등의 가격 3. 용역의 제공기간 ③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 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 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 말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사이버물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5)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 | | |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 업자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 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① 전자상기래 나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등을 배송[「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전송을 포 함한다]하는 사업자는 배송 사고나 배송 장 애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 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 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 ③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 | | |
| 는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 | | |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 | | |
| 청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 대통령령 | | |
| 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 분쟁 | | |
| 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 1. 분쟁의 당사자인 소비자(소비자가 소송 | | |
| 을 제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 2. 공정거래위원회 | | |
|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 | |
| 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 | |
|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 4. 수사기관 | | |
| 5.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 | |
|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 | |

| 비고(名토의견) | |
|------------|---|
| 전자상거래법(일본) | |
| 전자상거래법 | 제9 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 계시판을 등 연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처 비스 제공자가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1.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당가 한다. 2.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가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기관 기계판 의용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가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2.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과 소비자 가이에 이 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제33조에 따라 사이에 이 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제33조에 따라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 | |
|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 | | |
|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 | |
| 할 것 | | |
| 3.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 | |
|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 사항 | | |
| 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 | | |
| 용 통신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 | | |
| 제1호 및 제2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 | | |
|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 ③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 | | |
| 용 통신판매업자등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 | | |
| 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 | | |
| 른 신원 확인 조치를 통하여 얻은 게시판 | | |
|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의 신원정보를 제공하 | | |
| 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 | | |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2. 광정거래위원회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
| 제10조(사이버물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물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조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물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 |
|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 사 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관매를 위하 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 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 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 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관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등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준시자유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 트서비의 소재지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 트서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별소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항 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비고(검토의견) | | |
|------------|---|--|
| 전자상거래법(일본) | | |
| 전자상거래법 | 3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 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변호와 그 신고 형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변호와 그 신고 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수 있는 사항 | | |
| ② 통신관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 | |
| 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 | | |
| 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 | | |
| 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 | |
|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 | |
|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 | |
|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 | |
|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 | | |
|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 | |
|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
| 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 | | |
| 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 | |
| 4 있다. | | |
|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 | | |
| 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 | |
| 2.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 | |
|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 | |
| | | |

| 법제연구 |
|--------|
| 관한 |
| 공정화에 |
| 전자상거래의 |
| 자료집】 |
| [위크숍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범(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e, | | | |
| 4 v | 1. '지하는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2.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 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그리고 기관·행사방법 및 그리고 기관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그리고 기관 기관·청소의 기관 기관 | | |
| 9 | 요파에 찬안 사항(정작실외하의 전터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정차 | | |
| . 8 |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 | |
|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 | |
| 경우에는 재화동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 | | |
| 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 | | |
| 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 | |
|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 | | |
| 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 | |
|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 | | |
| 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 | |
|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 | | |
| 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 | |
|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
| 정하는 사항 | | |
| |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비고(검토의견) | |
|------------|---|
| 전자상거래법(일본) | |
| 전자상거래법 | (3) 통신관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제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 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 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 지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 이나 제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 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 할 수 있다. (5)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 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 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제14조(청약확인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 자루부터 재화등의 거래에 과하 청약을 발 | 제13조(통신판매에서의 승낙등의 통지) 판매업자 또는 일본의 경우 용열제공사업자는 상품 또는 지정과리 또는 용열에 - 성북실 통신파매에 대해서 | 일본의 경우 - 서북신 통신화매에 대해서 |
| 으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 대한 매매계약 또는 용역제공계약의 청약을 한 자 만 청약확인 의무를 부과함 | 만 청약확인 의무를 부과함 |
|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 | 로부터 그 상품의 인도 또는 권리의 이전 또는 용 - 청약확인은 서면으로 하여 | - 청약확인은 서면으로 하여 |
| 하게 알려야 한다. | 역의 제공에 앞서 그 상품 또는 권리의 대금 또는 | 야 한 |
| ②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 | 용역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는 것으로 - 청약확인 의무의 예외로서 | - 청약확인 의무의 예외로서 |
| 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 | 하는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 우편등에 의해 그 상 이미 급부가 이행된 경우를 | 이미 급부가 이해된 경우를 |
|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 | 품 또는 권리 또는 용역에 대한 매매계약 또는 용 규정함 | 计2000年 |
| 立 | 역제공계약의 청약을 받고, 그 상품 또는 권리의 대 | |
| | 금 또는 용역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 |
| | 때에는 지체 없이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 |
| | 따라 그 청약을 승낙한다는 내용 또는 승낙하지 않 | |
| | 는다는 내용(수령 전에 그 청약을 승낙한다는 내용 | |
| | 또는 승낙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그 청약을 한 자에 | |
| | 게 통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그 밖에 경제 | |
| | 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자에게 서면으로 | |
| |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권리의 대금 | |
| | 또는 용역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후 | |
| |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 지체 없이 그 상품을 송부하거나 권리를 이전하거 나 용역을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전항 본문에 대신에 전자적 따른 <u>서면에 의한 통지를 대신하여 시행령에서 정</u> 제공할 수 있는 하는 바에 따라 그 청약을 한 자의 승낙을 받아 통 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 그 밖에 경제산 엄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 우에, 그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 - 청약확인의 방법을 서면 대신에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함 |
|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 | |
|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 | | |
|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 |
| 立 | | |
|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 | |
|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 | |
|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 | |
|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 | | |
| 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 | |
|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 | |
|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③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 | | |
| 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 | |
|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정 | | |
| 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 | | |
| 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
| ④ 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 | |
|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 | | |
| | | |

| 7 |
|--------|
| 망 |
| 법제연구 |
| 관하 |
| 공정화에 |
| |
| 古 |
| 전자상거래의 |
| KI |
| 사료, |
| 위기숍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 제16조 삭제 | | |
| 제17조(청약철희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 제15조의2(통신판매에서의 계약의 해제 등) 통신판매 일본의 경우 | 일본의 경우 |
|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 를 하는 경우의 상품 또는 지정권리의 판매조건에 - 8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 - 8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
|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 대한 광고를 한 판매업자가 그 상품 또는 지정권리 할 수 있음 | 할 수 있음 |
|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 | 의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한 - '청약철회등'의 특약을 판 | - '청약철회등'의 특약을 판 |
| 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 자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구입자(다음 매조건에 대해 표시한 경우 | 매조건에 대해 표시한 경우 |
|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항에서 「구입자」라 줄여 말한다)는 그 매매계약에 는 제외함 | 는 제외함 |
|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 | 관련된 상품의 인도 또는 지정권리를 이전 받은 날 | |
| 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 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그 매매계약 우리나라의 경우 | न्यपस्य त्रन |
|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 | 의 청약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의 해제(이하 이 조예 -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 -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
| 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 | 서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판 할 수 있음 | 할 수 있음 |
| 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u>매업자가 청약철회등에 대한 특약을 그 광고에 표</u> - '청약철회등'을 하여야 하 | - '청약철회등'을 하여야 하 |
|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 | 시하여 한 경우(그 매매계약이 「전자소비자계약 및 는 경우와 이에 대한 예외가 | 는 경우와 이에 대한 예외가 |
| 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음 |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음 |
|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 | (2001년 법률 제95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 | |
|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드이 있으로 제1초이 기가에 청약처하드 | 자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주무성령에 저 정천는 점은에는 그 광고에 표시한다 따라 과다 | |
| 6 - 기 기 | 에 표시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주무성령에서 | |
|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7일 | 아니하다. | |
|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 | | |
| 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 | |
|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 |
|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 | |
|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 | |
|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 | |
|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 | |
|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 | | |
| 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 |
|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 | | |
| 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 | |
|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 | |
| | | |

| 법제연구 |
|--------|
| 관하 |
| 공정화에 |
| 전자상거래의 |
| 자료집】 |
| [위크숍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범(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 | | |
| 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 |
|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 | | |
| 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 |
|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 | |
| ↑ ₩ | | |
|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 | |
|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 | |
|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 | | |
| 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 | |
|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 | |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 | | |
| 으로 정하는 경우 | | |
|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 | |
|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 | | |
| 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 | |
| | | |

| 법(일본) 비고(검토의견) | |
|----------------|--|
| 전자상거래법(일본) |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
| 전자상거래법 | 고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 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 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 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 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제화등의 강단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 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 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 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 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 제15조의2(통신판매에서의 계약의 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 바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 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 제15조의2(통신판매에서의 계약의 해제 등) | |

| 비고(검토의견) | |
|------------|---|
| 전자상거래법(일본) | |
| 전자상거래법 |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부 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 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 관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채화등의 대금 환 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 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 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지1항 본은에 따라 재화를 만환받은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광급하지 아니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광급하지 아니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 | |
|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 |
|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 | | |
| 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 | | |
| 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 | | |
| 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 | |
| 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 | | |
| 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 | | |
| 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 | | |
| 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 | | |
| 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 | | |
| 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 | | |
| 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 | | |
| 적야 한다. | | |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 | |
|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 | | |
| 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 | | |
|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 | |
|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하 통신화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 | | |
| 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 | |
| 한다. | | |
|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 | | |
| 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 | | -청약철회등에 따른 재화 반 |
| 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 | | 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주 |
| 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 | 체가 다름 |
|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 | | |
| 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 | |
|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 |
| 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 | | |
| 무와 상계할 수 있다. | | |
| ②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 | | |
| 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 | |
|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 | |
| |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비고(검토의견) | |
|------------|---|
| 전자상거래법(일본) | |
| 전자상거래법 |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료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광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9)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강태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재화등의 반확에 필요한 비용은 <u>통신판매</u> 업자가 부담한다. ①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 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 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청약철회등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의 인도 또는 지정권리의 이전이 이미 이루어지 고 있는 때에는 그 인수 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구입자의 부담으로 한다. | |
|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① 소비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판매 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 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에 대금 미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 과할 수 없다. 모의 금액 중 큰 금액 |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7. 반환된 재화등의 동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 에 해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販賣價額) 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 액을 뺀 금액 고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 자 간의 손해매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 | |
|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 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 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 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 | 제12조의4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로부터 전조 -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 제5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업무 모두에 대해 일괄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됨 하여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과 제66조 제4항 및 *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 제6항에서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수탁사업자」라 한 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다)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업무 법"이란 <u>자신의 명의로 통신</u> | -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됨 *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 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 법"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지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 를 위탁한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이하 이 <u>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u> 절에서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위탁자」라 한다)가 통 <mark>공하거나</mark> 그 광고수단에 자 | 관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 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 |
|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 | 신판매를 하는 경우의 상품 또는 지정권리의 판매 <u>신의 이름을</u> | 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 |
| 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 | 조건 또는 용역의 제공조건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
| 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 | 되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 | 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 |
| 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 |
| 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 1. 상대방이 되는 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통신판매전 | 한다. |
|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 | 자메일광고위탁자에 관한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 | |
| 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 를 하는 때 | - 통신판매중개업장듸 통신 |
|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 2. 전호의 사항 외에, 통상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위 판매전자메일광고 | 판매전자메일광고 금지규정 |
| 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 탁자에 관한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제공받는 | 미이 머니 |
|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 |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광고금지의 예외 규정을 |
| 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 | 로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통신판매 | 과다 |
| 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전자메일광고위탁자에 관한 통신판매전자메일광 1.상대방이 되는 자의 청구에 | 1.상대방이 되는 자의 청구에 |
|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 | 고를 하는 때 | 근거 |
|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 | ② 전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통신판매전자메일광 2.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 2.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제 |
| 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 | 고수탁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위탁자에 공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 공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수 |
| 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 관한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려가 없다고 인정되는경우 | 려가 없다고 인정되는경우 |
| |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우에,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는 「다음 조 제1항 제2호」로 본다. | |
|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 퇴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 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 매중개의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 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 대중개의퇴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 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퇴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 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 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 | | |
| ㅜ니 세13소//시, 세1/3. ㅊ 세18소에 딱 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 |
|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 | | |
| 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 | |
|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 | |
|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 | | |
| 자가 책임을 진다. | | |
| ④ 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의 경우에 한 | | |
| 정한다)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 | | |
| 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 | | |
| 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 | |
|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 | | |
| 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통신파매 | | |
| 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 | | |
| | | |

| 법제연구 |
|--------|
| 관하 |
| 공정화에 |
| 전자상거래의 |
| 자료집】 |
| [워크숍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범(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 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 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 조세1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 업자"로 본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가.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확인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지 급받는 경우 가.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 나. 제8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 나. 제8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 |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 퇴 확보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 <u>x</u>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 412조(과대광고등의 금지)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 - 반품특약인 '청약철회 또는 업과는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의 상품 또는 지정권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리를 하는 때에는 그 상품의 성능 또는 권리 또는 표시이거나 현저하게 유리하용의 또는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제15조의2 대광고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제1항 단서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하여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 점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단하는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되는 대장하기 수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 의 것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오인 기관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반품특약인 '청약철회 또는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 항'이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표시이거나 현저하게 유리하 다고 표시하였을 경우에 과 대광고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 (d.)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제59조(매매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송부된 상품) 판매 - 상배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업자는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의 청약을 한 불구하고 판매업자가 일방적 | - 상배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자가 일방적 |

| 법제연구 |
|--------|
| 관한 법 |
| |
| 공정화에 |
| 급 |
| 전자상거래의 |
| 자료집】 |
| 위크숍 지 |
| 4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 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위 2) 광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근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수있다. | 의 제공급치 등) 관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전자메일광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관매를 하는 경우의 이자 chitg 하고 있음 소건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되는 자의 승낙을 받지 에 대한 전자메일광고의 제왕보를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경우지를 규정함 전자계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급 송신하기나 이를 광고의 상대방이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의 영상면에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송신하기나 이를 광고의 상대방이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의 영상면에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송신하기나 이를 광고의 상대방이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의 영상면에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단의 예외로서 '상대방이라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 · 상대방이 되는 자의 청구에 따라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의 상품 또는 지정권리의 판매조건 또는 경우에 제공조건에 관한 전자메일광고(이하 이 엄청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용역의 제공조건에 관한 전자메일광고(이하 이 엄청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함께 대한 전자메일광고,라 한다)를 하는 그 청약 또는 계약의 내용 패대 대 | 전자메일광고 -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미혹 제공사업자는 전자메일광고를 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의 opt out방식을 취하고 있음 승낙을 받지 에 대한 전자메일광고의 제신문 그 밖의 공금지를 규정함 - 승낙을 하지 않은 상대방을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나용하는 함법으로 보임으로 보임으로 보임으로 보임으로 보임하는 하는 구석의 예외로서 '상대방이란대조건 또는 판매를 하는 경우', '경제산광고(이하 이 업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한다)를 하는 그 청약 또는 계약의 내용 그 청약 또는 계약의 내용 |

|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
|----------------|
| 파이 |
| |
| ₹ 0 |
| -료집】전자 |
| 크숍 자.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 2.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지정권리 또는 | 또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 |
| | 용역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매매계 항을 통지하는 경우, '통신 | 항을 통지하는 경우, '통신 |
| | 약 또는 용역제공계약의 청약을 한 자 또는 이 관매전자메일광고를 제공 받 | 판매전자메일광고를 제공 받 |
| | 들에 대한 매매계약 또는 용역제공계약을 체결 | 는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
| | 한 자에 대하여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방법 |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 |
| | 으로 그 청약 또는 계약의 내용 또는 계약의 이 | <u>성</u> |
| | 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 경제산업성 | |
| |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 | |
| | 를 하는 때 | |
| | 3. 전 2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통상 통 <u>신판매전</u> | |
| | 자메일광고를 제공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 | |
| | 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경제산업성령에서 | |
| | 정하는 경우에, 통신판매전자메일을 하는 때 | |
| |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승낙을 받거나 같은 항 제1 | |
| | 호의 청구를 받은 관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 |
| | 그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의 상대방으로부터 통신판 | |
| | 매전자메일광고를 제공받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 |
| | 받은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통신판매전자메일 | |
| | | |

| () The (| | |
|---|--|---|
|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표시를 받은 후에 다시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그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그 상대방의 승 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3) 보 보일: (3) 보 (3) 보 (4)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 ③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통신판매전자 - 판매업자에게 승닉메일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기록의 보존의무 부과경우를 제외하고, 그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의 승낙을 받거나 상대방으로부터 | - 판매업자에게 승낙 관련기록의 보존의무 부과 |
| 本ので、一つので、一つので、一つので、一つので、一つので、一つので、一つので、「つうで、」ので、「しょうかい」のは、「しょうかい」のは、「しょうかい」のは、「しょうかい」のは、「しょうかい」のは、「しょうかい」のは、「しょう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のは、「しょくない。」。」は、「しょくない。」。」、「しょくない。」。」。」。」は、「しょくない。」。」、「しょくない。」。」、「しょくない。」。」、「しょくない。」。」、「しょくない。」。」。」。 | 청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록으로서 경제산업성 형에서 정하는 것을 작성하고,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나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통신판매전자 - 판매업자가 상대방에게 광매일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 제22호 또는 제3호 고를 거절할 수 있는 표시를 이 경우를 제외하고, 그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에 제 제공할 의무 부과 11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11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정한 판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상반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 판매업자가 상대방에게 광 고를 거절할 수 있는 표시를 제공할 의무 부과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 야 한다. ⑤ 전 2항의 규정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가 다른 자에게 다음에서 열거하는 업무 모두에 대해 일괄하여 위탁하고 있는 때에는 그 위탁에 관한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그 상대 방의 승낙을 받거나 그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는 업무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업무 3. 전항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제공받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업무 | |
| 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 처리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부 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따른 대금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 아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사장·근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신고가항을 말소할 수 있다. | | |
| 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의 제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 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범(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 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 | |
| 제24조(소비자회해보상보험계약동) ① 공정거 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 약(이하 "소비자회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회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소비자회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 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제계약 | | |
| ②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 | | |
| 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제13조 | | |
| 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 | |
|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 | | |
| 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 | |
|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 | | |
| 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 | |
| ③ 제2항은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 | | |
| 용하지 아니한다. | | |
| 1. 삭제 | | |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 | |
|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 | |
|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등을 배송 | | |
| 받지 못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 | |
|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 | |
|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소비자피해의 예 | | |
| |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 제10호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화등을 구매하는 거래화등을 구매하는 거래화등을 구매하는 거래화등을 구매하는 거래화등을 구매하는 거래자한을 구매하는 거래자한을 구매하는 거래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광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①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거래 ③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거나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 | | |
| 뢰성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 | | |
| 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 | |
| 라 다 | | |
| ⑥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 | | |
| 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 | |
|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비 | | |
| 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 | | |
| 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 | |
| 바 나 | | |
| 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려는 | | |
|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 | | |
| 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할 | | |
|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⑧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 | | |
| 엄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 | |
| 수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 | |
|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표지를 사용 | | |
| |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③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 | |
|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 | |
|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 | | |
| 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 | | |
| 여 광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 | |
|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방 | | |
| 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준용하 | | |
| 되,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 | |
| 신고하거나 제1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 | | |
| 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 | |
|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제37 | | |
| 조제1항제3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 | |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 | | |
| 호"로 보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 | |
| "이 법"은 각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 | |
|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본다.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관매업자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하는 행위(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권유광고를 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신원정보의 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하가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확보하기 관련회가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확보하기 관련한 경우로 한정하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관련 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관련 기관은 기관은 기관은 기관은 기관 등 경우로 한정하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기관은 기관은 기관은 기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기관은 기관은 기관을 한정하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기관은 기관은 기관을 기관한 기관은 기관은 기관을 기관한 기관은 기관을 한정하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기관은 기관을 기관한 기관은 기관은 기관은 기관을 한 경우로 한정하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기관은 기관을 기관을 기관한 기관은 기관은 기관은 기관을 기관을 기관한 기관은 기관은 기관은 기관을 기관을 기관을 기관한 기관은 기관은 기관을 기관을 기관을 기관을 기관을 기관을 기관을 기관을 기관한 기관은 기관을 기관을 기관을 기관을 기관한 기관은 기관을 | 제11조(통신판매에 대한 광고)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 - 일본의 경우 통소장원자는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의 상품 또는 지 대해서는 광고규제를 장고를 하는 매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에 그 상품 또는 권리 또는 용역에 따라 해당 광고에 그 상품 또는 권리 또는 용역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광고에 청구에 의해 이러한 사항들을 기재한 <u>서면</u> 을 지체 없이 교부하거나 이러한 사항들을 기계한 <u>서면</u> 을 지체 없이 교부하거나 이러한 사항들을 기계한 소년 달에 자각이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에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을 지체 없이 제공한다는 나이 따라 이러한 사항들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품 또는 권리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관매가격에 상품의 배송료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는 판매가격 및 상품의 배송료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는 판매가격 및 상품의 배송료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는 판매가격 및 상품의 배송료가 | - 일본의 경우 통신판매에 대해서는 광고규제를 중심으 로 규제를 하고 있음 |

| 관한 법제연구 |
|----------|
| 공정화에 관 |
| 전자상거래의 |
| 위크숍 자료집】 |
| 4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 | 비고(검토의견) |
|---|---|--|
|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제1항에 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2. 상품 또는 권리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불 시기 및 방법3.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권리의 이전시기 또는 용 | |
| | | - 광고표시로서 '청약철회등' 을 기재하라고 규정하고 있 음 |
| 제 2 도 (저 자 사 거 개 소 비 자 다 체 두 이 지 의) 포 제 | 5. 전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경제산업성령에 서 정하는 사항 | - 소비자다체에게 파매어자 |
| | 제20소구시(이건전제에 단단 묘시(8 단) 거시소비시간 - 소비시간에에게 전배표시체는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가 통신판매를 에 대한 부당한 광고의 금지 최근 꼬이이 사포 또는 기적기리이 때매조지 또는 청그의의 이정한 | 나 비스 한 레이스에 되지 대한 부 다 무 다 한 다 되고 있고 하고 |
| 서 공정거배얼서를 확립하고 오미사의 편 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 아근 경구의 <u>강품 또는 시경전리의 판매소신 또는</u> 용역의 제공조건에 대한 광고를 하는 때에 불특정 | 소 나 선생 나는 얼마를 받는데 되었다. |
|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다수의 자에 대하여 그 상품의 성능 혹은 권리 혹 은 용역의 내용 또는 상품 혹은 권리의 매매계약의 | |
| | 청약철회 혹은 해제에 관한 사항(제15조의2제1항 단 서에서 규정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 |
| | 포함한다)에 대하여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표시를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 하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하거나 유리하다 고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시제로 하거 나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판매업자 또는 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 또 는 그 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거 그 밖 에 그 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 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 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는 광정거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 여야 하며, 광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 ② 주무대신은 전향에 따른 <u>신청이 있는 때에는 필</u> 요한 조사를 하고, 그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 정하는 때에는 이 법률에 근거한 조치 그 밖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주무관청의 조사 및 조치의 무를 규정함 |

| 법제연구 |
|--------|
| 관하 |
| 공정화에 |
| 전자상거래의 |
| 자료집】 |
| [위크숍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요청을 받 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 | | |
| 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 | |
|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 | |
| 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 | | |
| 사들 안 경두에는 그 설파(소사 설파 시정 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 | |
| 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 | |
|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
| ④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 저 | ④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 제60조(주무대신에 대한 신청) 누구든지 특정상거래의 | |
| 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 출 | 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 공정 및 구입자등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 | |
| 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정하는 | 당하는 때에는 주무대신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제 | |
|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 | | |
| 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 | |
|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시정조 | | |
| 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과 | | |
|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제 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 | | |
| 고안이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 | |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 | |
| 지 아니하다. | | |
| ⑥ 광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 | | |
| 여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 | | |
| 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 | | |
| 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 | |
|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 | | |
|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의 조사활동에 | | |
| 참여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에게 예산 | | |
| 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 | |
| 있다. | | |
| 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 | |
| 자상거래 및 통신관매의 | | |
| 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 | | |
| - |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하여 필요하면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 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검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에 관한 장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막한 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이나 자료 공유를 가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이나 자료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공정거 매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 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색된 정보 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 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 |
| 제29조(평가·인증 사업의 공정화) ① 전자상 거래 및 통신관매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 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인증 사업 자"라 한다)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대통령 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인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 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 |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를 위하여 한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 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③ 광정거래위원회는 평가·인증 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
| 제30조(보고 및 감독) ① 제31조에 따라 시정 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 회 및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확인 또는 자료 제 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 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 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 | | |
| 원회, 시·노시사 또는 시상·라다·구청상인 | | |
|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 | |
|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 | | |
| 우에는 제32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 | |
| 그 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 | |
|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 | | |
| 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해하도록 시 | | |
| 정방안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에 따 | | |
| 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 | | |
| 자가 권고를 수락하면 제3항에 따라 시정 | | |
| 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 | | |
| 점야 한다. | | |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 | | |
| 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 | |
| 권고의 수락 여부를 그 권고를 한 행정청 | | |
| 에 알려야 한다. | | |
|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그 | | |
| | | |

| 관한 법제연구 |
|---------|
| 공정화예 |
| 전자상거래의 |
| 율 자료집】 |
| 워크숍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권고를 수락하면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 를 명한 것으로 본다. | | |
|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지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0조의2,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5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33조조의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32조(시청조치 등) ① 공성기배위원회는 사 업고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등 해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 행하지 그 시정조치를 변할 수 있다. 제14조(지시) 구무대신은 관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자(항을 제외한다) -시청조치의 사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 일본의 경우 -시청조치의 사유: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 거나', '다음에 열거하는 행 위를 한 경우' 그리고 '통신판매에 관한 거 래의 공정 및 구입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자의 이익 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하는 때'로 규정함 |
| 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통신판매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용역제공계약에 근거한 채무 또는 통신판매에 관한 매매계약 또 는 용역제공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용역제공계약의 청약시키고자 하는 행위로 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것 | 이 침해될 우려가 있 정하는 때'로 규정함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의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하 조치 | 3. 전 2호의 것들 외에, 통신판매에 관한 행위로서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의 공정 및 구입자 또는 용 역을 제공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것 | |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청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장한다. ④ 광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 ② 경제산업대신은 통신관매전자메일광고수탁사업 -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수탁 자가 제12조의4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 사업자에 대하여도 준용 하는 제1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위반하거나 다음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의 공정 및 구입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 는 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그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수탁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위탁 | -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수탁 사업자에 대하여도 준용 |

| 관한 법제연구 |
|----------|
| 공정화의 |
| 전자상거래의 |
| 위크숍 자료집】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에 대한 통신판매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용역 제공계약의 청약을 시키고자 하는 행위로서 경제 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것 2. 전호의 것 외에, 통신판매에 관한 행위로서, 통신 판매에 관한 거래의 공정 및 구입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것 | |
|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 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제21조제1항제1호제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제15조(업무의 정지 등) 주무대신은 판매업자 또는 용 일본의 경우 역제공사업자가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제5항을 - 업무정지 사유로는 '통신관 제외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전조 제1 매에 관한 거래의 공정 및 함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 통신판매에 관한 거 구입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반 레의 공정 및 구입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자의 는 자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 에의 공정 및 구입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자의 는 자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때 또는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가 같은 항 는 때, '판매업자 또는 용역 의 규정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그 관 제공사업자가 같은 항의 규 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정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않 기간을 정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은 때'로 규정함 | 일본의 경우 - 업무정지 사유로는 '통신판 매에 관한 거래의 공정 및 구입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자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관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가 같은 향의 규정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않는 때'로 규정함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2.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 |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업무정지 기간으로는 1년 이내로 정함 |
| 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② 경제산업대신은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수탁사업 -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수탁 | -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수탁 |
| 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 | 자가 제12조의4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 사업자'에 대하여도 준용 | 사업자'에 대하여도 준용 |
| 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하는 제1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위반하거나 |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상 | 전조 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 통신판매에 | |
| 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 관한 거래의 공정 및 구입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반 | |
| 일시 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 | 는 자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 | |
|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 | 정하는 때 또는 통신관매전자메일광고수탁사업자가 | |
| 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 |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 |
| 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그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수탁사업자에 대하여 1년 | |
| 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에 관 | |
| 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 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 |
| 이에 따라야 한다. | 있다. | |
| ③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 | |
|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 | |
| 는 기관·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 | |
|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경우에 해당 | ③ 주무대신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 주무관청이 업무정지를 | - 주무관청이 업무정지를 명 |
| |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 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전자상 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 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 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 관을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관을 할 때에는 「비송 사건절차법」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경제산업대신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병한 사실을 공표할 의무 부 |
| 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① 공정 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 | |
|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장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이 | | |
|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 | | |
|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시정 | | |
| 권고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하 | | |
| 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 | |
|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 | |
|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 | |
| 분쟁조정기구(이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 | | |
| 구"라 한다)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 |
| ②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 | |
| 수·구청장은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 | |
|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 | |
|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 | | |
| 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알려 | | |
| 야 한다. | | |
| ③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 | | |
| 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 | | |
|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 | |
| |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32조에 따른 시청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분쟁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는 분쟁의 조 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정 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조정을 의뢰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관수·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 |
| 제34조(과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정금을 부과할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 | |
|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 | | |
|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정 | | |
| 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 | | |
| 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 | |
|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 | | |
| 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 | |
| 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 | |
| 여야 한다. | | |
|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 | | |
| 2.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 | |
| 사 | | |
| 3. 위반챙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 | |
|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 | |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업 | | |
| 자인 회사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회사가 | | |
| |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 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환급 처 분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6까지의 다정을 준용한다. | | |
|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 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 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 |
| 제36조(전속관할)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訴)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 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 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 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제37조(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그 밖에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 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 |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
| (1) 이 10 시에 10 시의 10 에 나 시가 시기 | | |
|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 | |

| | 선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 | | |
| 대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 | |
|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 | |
| 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 |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 | |
|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 |
| 관한 법률」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 | |
| 규정을 준용한다. | | |
|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 | |
| 및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시·도지사의 처 | | |
| 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 | | |
| 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 | |
| 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 | |
| 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 | | |
| 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 | |
| ④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 | | |
| 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 | | |
| 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관한 법률, 제62조를 준용한다. | | |
| 제40조(발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학의 별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로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 | |
| 제41조 삭제 | | |
| 제42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 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 | |
| 제43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 | |
| 제44조(양별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중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 조부터 제4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계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 | |
| 제45조(과태료) ①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영업을 계속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 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 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범(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4 |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 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 |
| δ. | .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 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 | |
| |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 | |
| .9 | .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 업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 | |
| |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 약등을 체결한 자 | | |
| 7. | .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 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 | |
| ∞. | .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 | | |
| | 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출석하 | | |
| 6 | 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위반한 자 9.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 | |

[워크숍 자료집]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셤토의션) |
|-----------------------------|------------|----------|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 | |
| 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 | |
|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 | |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 | |
| 거짓으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 |
| 10.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 | | |
|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 | | |
|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 | |
| 한 자 | |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 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 1.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 | |
|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 | | |
| 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 | | |
| 나한 자 | | |
|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 | | |
| 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 |
| | |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일본) | 비고(검토의견) |
|---|------------|----------|
|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아니한 자 | | |
|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하거 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 | |
|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 한 자 | | |
|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 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 | |
| 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 |
| 6. 제20조의3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제1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지 | | |
|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부과·징수한다. | | |

제 3 주제

2016년 OEDC의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권고' 개정 개요

(2016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OECD Recommendation)

김 슬 기 (대전대학교 조교수)

1. 2016년 지침 개정 배경 및 과정

□ 개정 배경

- 1999년 지침(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에 대한 평가
- 2009년 OECD가 회원국의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999년 전 자상거래 관련 지침의 국내 적용 관련 쟁점을 조사²²)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음.
- 지침의 내용이 너무 일반적임
- 지침이 오래 되어 기술의 발달로 인한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이 떨어짐
- 회원국들 간 지침의 적용 수준이 상이함
- 정보의 공유 및 평가의 부족, 준거법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있음
-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정보 관련 사생활 보호의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함

²²⁾ OECD Conference on "Empowering E-consumers Strengthening Consumer Protection in Internet Economy" Background Report, 2012 참조

- 변화된 전자상거래 환경
- 1999년 지침 제정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은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23)

< 변화된 전자상거래 환경 >

| 구 분 | 내 용 |
|---------------|------------------------------|
| BtoC 비즈니스 모델의 | 온라인 광고, 온라인 결제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
| 진화 |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과 관련 쟁점 대두 |
| 모바일 시장의 출현 |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출현 |
| 판매형 소비자의 등장 | CtoC 규모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
| | 보호 문제 등장 |
|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 | 영화, 음악,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의 범위 확대 |
| 참여형 소비자의 등장 | 후기, 평가, SNS 여론 형성 등 소비자가 전자상 |
| | 거래에 다양한 영향력 행사 |
| 온라인에서 아동보호의 | 아동의 법적 지위, 사생활 문제 등 보호의 필요성 |
| 필요성 강조 | 증대 |
| 전자상거래에서의 | 지속가능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자 |
| 신뢰 형성 강조 | 소비자 간의 신뢰 형성 중요성 강조 |

□ 개정 과정

- 2009년 12월, OECD 컨퍼런스
- 2008년 OECD 각료회의의 요청에 따라 1999년 지침 제정 이후 변화된 환경에 대하여 논의함
- 2011년 4월, 소비자정책위원회 워크숍
- 1999년 지침의 검토를 위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경향에 대하여 논의함

²³⁾ 이금노, 황미진, OECD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5, 35-36면

- 2014년 4월, 제87차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 각국 대표단이 지침 개정 작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개정 작업 에 착수함
- 2014년 10월, 제88차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 대한민국, EC,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포르투갈, 러시아, 미국, 브라질, 캐나다, 이스라엘, 국제소비자기구, OECD 기업산업자문 위원회로 구성된 실무반 구성
- 사무국에서 초안 제시
- 2015년 4월, 제89차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 그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개정안 도출
- 2015년 10월, 제90차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 합의안 제시 및 의견 수렴
- 2016년 3월 24일, 개정 지침 발표

□ 개정 지침 개요

- 지침의 구성
- 전문
- 본문
- ▶ 위워회 고려 사항
-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제안
- I. 적용범위에 관한 동의
- Ⅱ. 회원국에 대한 권고
- 제 1 장 : 일반원칙
 - A. 투명하고 효과적인 보호(1-2)
 - B. 공정한 거래, 광고 및 마케팅 실무(3-24)
 - C. 온라인 정보공개
 - 일반원칙(25-27)
 - 사업자 정보(28-30)

- 재화와 용역에 관한 정보(31-32)
- 거래 관련 정보(33-35)
- D. 확인절차(36-39)
- E. 대금 결제(40-42)
- F. 분쟁해결 및 구제절차(43)
- 내부 대응(44)
- ADR(45)
- 피해구제(46-47)
- G. 사생활 보호 및 보안(48-49)
- H. 교육, 인식 및 디지털 경쟁력(50-52)

제 2 장 : 실행 원칙

정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관련 원칙(53)

제 3 장 : 국제 협력 원칙

국제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부의 노력 관련 원칙(54)

- Ⅲ.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권고
- Ⅳ. 지지자 및 사무국에 대한 확산 요청
- V. 비지지자에 대한 지지 요청
- VI.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대한 지침
- 반영된 관련 이사회 권고
- 국경을 넘는 사기 및 기망적 상거래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지침에 관한 이사회 권고[c(2003)116]; 소비자분쟁해결 및 피해배상을 위한 이사회 권고[C(2003)74]: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선언 (서울 선언) [C(2008)99]; 인터넷 정책 수립의 원칙에 관한이사회 권고 [C(2011)154];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 지침에 관한 이사회 권고(사생활 지침) [C(80)58최종, 개정됨]; 소비자 정책 결정에 관한 이사회 권고 [C(2014)30];

경제 및 사회번영을 위한 전자적 보안 위험 관리에 관한 이사회 권고 (보안 위험 권고) [C(2015)115]

- 주요 내용
 - 제목 변경
 - 1999년 '지침에 대한 권고'에서 '권고'로, 'Electronic Commerce'에서 'E-Commerce'로 표현 변경
 - 핵심 내용24)
 - ▶ 비금전적 거래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적 정보 교환을 대가 로 무료 상품과 재화를 획득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권고의 적용 범위를 비금전적 거래까지 확대하고 배상 조치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 전자콘텐츠 제품 전자콘텐츠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적 접근이나 사용제한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 참여형 소비자 제품 홍보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소비자가 등장함에 따라 이들의 홍보가 신뢰성을 갖추 어야 함
 - ▶ 모바일 기기 모바일 기기의 사용 증대로 기기의 특성을 반영
 한 효과적인 정보 공개의 방법을 모색하고 기술적인 제한이나
 사용기기의 특수한 성질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 ▶ 사생활 침해와 보안상의 위험 사생활 침해와 보안상 위험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경고하며 특히 BtoC 전자상거래에서의 특별한 보호책을 마련하여야 함
 - ▶ 결제 수단 보호 다양한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최소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필요함

^{24) 2016}년 개정 권고의 전문(Foreword) 내용

【워크숍 자료집】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 ► 제품안전성 몇몇 나라에서는 오프라인 판매가 금지되었으 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가능한 제품이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요청됨
- ▶ 국제적 협업에 대한 중요성 강조
- ▶ 행동경제학에 근거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 정책이 만들 어질 수 있어야 함